

대통령령 제 호

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2 제2호 위반행위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“법 제17조제1항”을 “법 제17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송유관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17조제1항 제2호	1,500	2,200	3,000
--	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2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(제7조제3항관련)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<단서 신설> 다. ~ 라. (생략)	[별표 2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(제7조제3항관련) 1. 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 다. ~ 라. (현행과 같음)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~ 라. (생략)				
마.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조제1항	120	250	500
<신설>				

2. -----

-----	-----	-----		
		---	---	---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			
마. ----- ----- ----- -	법 제17조제1항제1호	---	---	---
바.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송유관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17조제1항제2호	1,500	2,200	3,000